

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240108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9. 22.

판결 선고2016. 11.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92,878,305원 및 위 금원 중 90,639,895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는 2015. 11. 27.까지, 피고 C는 2015. 11. 26.까지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2. 25. 접수 제7102호로 마친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24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금전채권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증 의뢰를 받고 2013. 3. 25.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에 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3. 25.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2. 25.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11.에 중소기업은행에 90,639,895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639,8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추가보증료 등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2,238,410원이고, 위 대위변제일 이후 적용되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D 앞으로의 각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경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공유자 및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자신의 딸인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2. 25. 접수 제7102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240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기 마쳐 주었다(위 각 매매예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각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는 신용보증약정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92,878,305원(= 대위변제금 90,639,895원 + 추가보증료 2,238,4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639,8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인 2015. 11. 27.(다만 피고 C는 2015. 11. 26.)까지 원고 소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앞서 보았거나 갑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 이미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있기 전에 피고 회사는 매출이 부진하고 다수의 연체기록이 발생하는 등 부실 징후가 발견되어 원고는 소정의 기준에 따라 2013. 11. 2.자로 피고 회사를 집중사후관리대상 회사로 분류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그 후에도 재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5. 2.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대위변제로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성남시장, 충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그 가액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과 근접한 시기인 2014. 1. 1. 기준으로 92,636,200원가량인 점, 반면 피고 B의 채무액은 원고에 대한 것만 92,878,305원에 달하고, 여기에 피고 B가 자인하는 피고 D에 대한 채무액이 75,650,000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7049 판결 참조), 그것이 실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상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점은 같다.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에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 D의 약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D는 피고 B에게 생활비로 합계 7,565만 원(= 2013. 7. 12.에 3,000만 원 + 2013. 11. 21.에 1,809만 원 + 2013. 12. 2.에 256만 원 + 2014. 1. 28.에 2,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뿐이고,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나 2호증, 을라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것만으로는 피고 D가 아버지인 피고 B를 상대로 7,565만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아버지인 피고 B의 사업상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 B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대신 어머니인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악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피고 D가 진정한 대여금 채권자가 맞다면, 다른 일반채권자와 함께 피고 B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향후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공평하게 배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희록

별지